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55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박홍근 • 이건태 • 한민수

이수진 • 박상혁 • 한정애

박홍배 • 박주민 • 조정식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

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목표"를 "목표(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리계획"을 "관리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전망"을 "재정전망(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②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u>목표</u>	1목표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
	<u>한다)</u>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	③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	1
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	
요인 및 <u>관리계획</u> 등에 대한	관리계획과 국가재정
평가・분석보고서	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	4
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	
년마다 장기 <u>재정전망</u> 을 실시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⑤ ~ ⑪ (생 략)